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00

발의연월일: 2020. 7. 10.

발 의 자 : 이 용 · 윤주경 · 윤재옥

강기윤・하영제・이양수

주호영 · 정진석 · 이종배

안병길 · 허은아 · 권명호

김정재 · 박대수 · 김희국

정운천 • 류성걸 • 구자근

이 영・김예지・태영호

이달곤 • 이주화 • 곽상도

김태호 · 서정숙 · 한무경

정희용 • 김석기 • 김 웅

김성원 • 이종성 • 성일종

김승수 · 정경희 · 지성호

의원(3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체육계 성폭력 등 폭력에 대한 대책으로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고, 체육지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체육지도자 등에 대한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0년 8월 5일 시행될 예정임.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는 신고 관련 자료를 요구

하거나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사건이 발생해도 이를 해결할 수 없는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2차 가해 금지 조항이 미비해 이에 대한 개선도 요구되고 있음.

실제로 최근 불거진 트라이애슬론 최숙현 사건에 따르면 폭행·폭언에 대한 고인의 지속적인 호소에도 관계기관 등이 조사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가해자 측의 지속적인 회유와 협박이 있었던 점이 드러나 국민적 지탄과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스포츠윤리센터가 독립적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보장하도록 하고, 스포츠윤리센터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기관·단체의 임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그리고 폭력 또는 성폭력 신고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긴급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였으며, 긴급보호가 필요한 신고자 및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또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원활한 조사를 위해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신고 등에 대한 방해와 취소 강요, 조사에 대한 방해 행위 등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스포츠 비리를 근절하고 체육인의 인권을 두 덥게 보호하여 체육인들이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 하는 것임(안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10까지 및 제46조의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3항제1호 중 "스포츠비리"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스포츠비리"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다.

- 가. 승부조작 또는 편파판정 등에 관한 사항
- 나. 체육 관련 입시비리에 관한 사항
- 다.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성폭력 등 폭력에 관한 사항
- 라. 체육단체·경기단체 및 그 임직원의 횡령·배임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위반에 관한 사항
- 마. 그 밖에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긴급보호가 필요한 신고자 및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 시설 운영 ④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 기재 사항, 운영, 이사회의 구성 및 권한, 임원의 선임,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⑤ 스포츠윤리센터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단체 등의 임직원에 대하여 파견을 요청할 수있다.
-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의4부터 제18조의8까지를 각각 제18조의6부터 제18조의10까지로 하고, 제18조의4 및 제18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8조의6(종전의 제18조의4)제1항 중 "조사내용"을 "신고 및 상담, 조사내용"으로, "관할 수사기관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로 하고, 제18조의7(종전의 제18조의5)의 제목중 "신고 및 상담"을 "신고·상담 및 임시보호"로 하며, 같은 조(종전의 제18조의5)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스포츠윤리센터 및 지방자치단체"로, "신고 및 상담"을 "신고·상담 및 임시보호"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중 "신고 및 상담"을 "신고·상담 및 임시보호"로 하며, 같은조 제3항 중 "신고 및 상담"을 "신고·상담 및 임시보호"로 하며, 같은조 제3항 중 "신고 및 상담"을 "신고·상담 및 임시보호"로 하며, 같은조 제3항 중 "신고 및 상담"을 "신고·상담 및 임시보호"로 하며, 같은

- 제18조의4(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제18조의3제3항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자와 피해자 및 신고와 관련된 조사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신고와 신고에 대한 조사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8조의3제3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 ⑤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8조의3제3항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긴급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사하여야 한다.
 - ⑥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관련 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빙(證憑) 등으로 비추어볼 때 조사를 진행할 실익이 없 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8조의5(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8조의3제3항 제1호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

- 원으로 하여금 체육단체 및 경기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조사대상이 되는 체육단체 및 경기단체 등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③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항에 따른 조사와 관련하여 체육단체 및경기단체 등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기관의 장에 대한 시정 및 임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또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 제1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 익조치를 한 경우
- 2. 제1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 3. 스포츠윤리센터가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 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 4.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④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

하여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1. 스포츠윤리센터의 위원 및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 2.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 3. 제46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	
립) ①・② (생 략)	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	③	
호의 사업을 한다.		
1.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	1. <u>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스포</u>	
침해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	<u> 츠비리</u>	
사		
<u><신 설></u>	가. 승부조작 또는 편파판정	
	등에 관한 사항	
<u><신 설></u>	나. 체육 관련 입시비리에 관	
	한 사항	
<u> <신 설></u>	다.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성폭력 등 폭력에 관	
	<u>한 사항</u>	
<u> <신 설></u>	라. 체육단체・경기단체 및	
	그 임직원의 횡령·배임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u>법률」 제22조에 따른 보</u>	
	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 \ \ \ \ \ \ \ \ \ \ \ \ \ \ \ \ \	위반에 관한 사항	
<u> <신 설></u>	<u>마. 그 밖에 스포츠 공정성</u>	

2. (생 략)<신 설>

3. ~ 5. (생략)

 ④ 스포츠윤리센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신 설>

⑤ (생략)

⑥ <u>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u> 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확보를 위하여 스포츠윤리

 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 2. (현행과 같음)
- 3. 긴급보호가 필요한 신고자 및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 시설 운영
- 4. ~ <u>6.</u> (현행 제3호부터 제5 호까지와 같음)
- ④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 기 재 사항, 운영, 이사회의 구성 및 권한, 임원의 선임, 감독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⑤ 스포츠윤리센터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행정기관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단체 등의 임직원에 대하여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 츠윤리센터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

① (생 략) <신 설> 고 보장하여야 한다.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제18조의4(위반행위의 신고 등)

- ① 누구든지 제18조의3제3항제 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스포츠윤 리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자와 피해자 및 신고와 관련된 조사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 를 제공한 사람(이하 "신고자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 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신고와 신고에 대한 조사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8조의 3제3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

<신 설>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 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⑤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8조의 3제3항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 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긴급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 고 조사하여야 한다. ⑥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관련 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빙(證憑) 등으 로 비추어볼 때 조사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의5(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8조의 3제3항제1호에 따른 조사를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체육단체 및 경기단체 등에 대 하여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 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 며, 관계자의 사무소에 출입하 여 장부 ·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조사대상이 되는 체육단체 및 경기단체 등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③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항에 따른 조사와 관련하여 체육단체 및 경기단체 등의 임직원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기관의 장에대한 시정 및 임직원의 징계를요구할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 또는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있다.
- 1. 제1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 2. 제1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 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 3. 스포츠윤리센터가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제18조의4(고발 및 징계요구) ①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

 발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18조의5(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 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 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4.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업무
의 수행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④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수사기
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u>제18조의6</u> (고발 및 징계요구) ①
신고 및
<u> 상담, 조사내용</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
<u> 거나</u>
②・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의7(신고·상담 및 임시보
<u>호</u> 시설의 설치 등) ① <u>스포츠</u>
<u>윤리센터 및 지방자치단체</u>
<u>신고·상담 및 임시보호</u>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 · 운영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③ 스포츠윤리센터 및 제1항에 따른 시설에서 신고 및 상담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의6(성폭력 등 폭력 예방 저 교육의 실시) (생 략)
- 제18조의7(장려금의 환수) (생 제18조의9(장려금의 환수) (현행 략)
- 축·운영 등) (생 략)

<신 설>

2	<u>신고・상</u>
<u>담 및 임시보호</u>	
③	
	<u>신고·상</u>
답	
<u> 18조의8</u>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그수사 기가 (취취	-1)10= A)0

- 교육의 실시) (현행 제18조의6 과 같음)
- 제18조의7과 같음)
- 제18조의8(징계정보시스템의 구 제18조의10(징계정보시스템의 구 축・운영 등) (현행 제18조의8 과 같음)
 - 제46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 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는 공무원으로 본다.

- 1. 스포츠윤리센터의 위원 및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

 람
- 2.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 3. 제46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